



보험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¹⁾

요 약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책임성, 형평성, 투명성, 효용성 측면에서 보험의 역할 확대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충적 해석 원칙으로, 약관의 불명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 분쟁 해결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보험의 선의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1.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 및 쟁점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충적 해석 원칙에 해당함
 -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인정하고 있음²⁾
 - 다른 해석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약관을 해석해 보아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모두 합리성이 있는 경우 비로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는바, 이를 ‘보충성’이라 함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험약관 해석 관련 분쟁에서 결론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논거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음
 - 법원은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 ‘재해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면서, 그와 같은 해석의 근거 중 하나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제시하였음(대법원 2015다243347)

1) 보험연구원은 「보험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제6회 보험법 포럼, 2022. 8. 12)」을 개최하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 인정 근거 및 한계, 바람직한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본고는 본문에서 주제발표(발표자: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별첨으로 발표자료 및 토론내용을 소개함

2) (한국) 약관규제법 제5조; (독일) 민법 제305c조; (영국) 소비자권리법 s69; (프랑스) 소비법 L133-2



CEO Brief

- 특정 수술 대체 시술이 암보험 및 상해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근거로 수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음(대법원 2010다28208; 서울고법 2017나2030581)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충적 해석 원칙임에도, 일부 사례의 경우 다른 해석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지 않은 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곧바로 적용하고 있음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해석을 통해 명확한 결론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 일방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약관의 불명확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합리적 적용 범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인정 근거 및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인정 근거 및 한계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인정 근거는 ① 책임성, ② 형평성, ③ 투명성, ④ 효용성이라고 볼 수 있음
- 약관은 사업자가 작성하므로, 약관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책임 원칙에 부합함
 -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약관 내용을 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계약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한 불이익(Penalty)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가급적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약관을 해석함으로써 보험의 보장대상 및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보험계약의 효용을 높일 수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 근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가짐
-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개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초서류 변경 권고 등을 하는 상황에서, 약관의 불명확성(특히 표준약관 조항의 불명확성)에 대한 책임이 보험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움
 -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무효 조항,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각종 규제 등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음



CEO Brief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약관을 상세하게 정하는 과정에서 가독성 저하, 보장범위 축소,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보장대상 및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보장범위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도 보험의 효용성 제고에 중요한 요소임
- 이러한 인정 근거 및 한계를 고려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일반적인 계약 및 약관 해석 방법으로 불명확성을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약관의 불명확성이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인 경우,³⁾ 또는 보험금 지급이 보험의 선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⁴⁾에는 더욱 신중한 적용이 요구됨
- 한편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에 앞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해석을 거칠 필요가 있음
- 약관 해석 시 (i) 당해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 (ii) 계약 체결 당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 (iii)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의 균형 및 보험료 인상 유발 여부, (iv)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 조장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결어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보험의 선의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황현아 연구위원
hahwang@kiri.or.kr

3) 수술 대체 시술을 수술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약관 작성 당시에 당해 시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해 시술이 수술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약관에서 사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불가능함

4) 자살면책제한조항과 같이 본래 면책 대상인 고의사고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의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 보장대상 및 보장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보험의 선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 포럼 개요

- 일 시 : 2022. 8. 12(금) 15:00 ~ 16:30
- 장 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층), ZOOM을 통한 화상 세미나 동시 진행
- 주 최 : 보험연구원
- 프로그램

시간	내용
15:00	개 회
15:05 ~ 15:45	주제발표 :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15:45 ~ 16:20	패널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장 : 최병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험법학회 회장) ■ 토론자 신현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재현 (라이나생명 상무)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나다 순
16:20 ~ 16:30	질의응답 및 폐회

2. 패널토론

가. 신현화(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다른 모든 해석 원칙을 모두 적용하였음에도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특히 약관 작성 당시 사정 및 그 이후 변경된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당해 조항뿐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의 숨은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소송 실무를 수행하다보면, 법원이나 감독당국이 보험계약자가 약자라는 전제에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음
 - 보험약관 작성 및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의무 이행의 현실적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될 것임
- 즉시연금 사건의 경우도, 약관 작성 및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음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차감하지 말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계기로 다수의 민원 및 소송이 발생함
 - 그러나 차감에 관한 사항이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이상,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명시적 지시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취지의 2021년 10월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한편,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즉시연금 가입 시 설계사가 만기형과 종신형을 비교 설명하는 과정에서, 만기형의 경우 만기에 보험료를 환급받는 대신에 월 연금액은 종신형에 비해 적다는 점이 설명된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즉시연금 관련 사건 중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를 보면, 최저보증이율 적용 금액보다 월연금액이 적은 경우 최저보증이율에 따라 연금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차감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볼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예시로 제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더욱 부당한 측면이 있음
- 그밖에도 갑성선암 원발부위 조항 등 약관 해석이 문제된 사례들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회사에 불리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이재현(라이나생명 상무)

- 발표 내용에서 제시한 사례 중,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고지 문항 구성에 대해 보험회사의 자율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업계는 현재 감독당국의 통제를 받는 표준적 고지문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항의 해석을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좁게 해석하고, 그 결과 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하고 미고지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도 인정되지 않게 됨
- 감독당국의 권고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조위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일단 결정이 이루어지면 보험회사는 그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기준 등을 모두 변경하게 됨
 - 한편, 감독당국은 특정 시술을 약관상 수술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기도 하고 있는데¹⁾ 이러한 수술 기법을 일률적으로 수술로 보장하도록 권고할 경우 보장 범위를 줄이거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됨
 - 예컨대, 체외충격파 치료나 변연절제술과 같이 단기간 수회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술의 경우, 이를 수술로 보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결국 보험회사는 보장범위를 제한하는 방식²⁾으로 약관을 수정하게 되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음

다. 최준규(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인정 근거 및 한계에 대해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이견이 있음
 - 표준약관의 경우 작성자가 감독당국이라도 소비자가 약관 작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일방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재해사망보험금 사례의 경우, 전형적으로 보험회사가 약관을 잘못 만든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 약관 작성 당시에 작성자가 약관을 더 명확하게 작성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즉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두 가지 해석 결과 자체의 타당성만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임
 - 중요한 사항이긴 하나 이는 해석 결과의 타당성에 관한 다양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이를 근거

1) 2022년 초 신의료기술 80개 항목에 대해 약관 반영을 권고하였고, 2012년에도 최신 수술 기법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권고한바 있음

2) 60일에 1회만 보장하도록 하거나, 단독으로 이루어진 변연절제술의 경우 약관에서 보장하는 수술에서 제외하도록 약관을 변경함

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을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 보험약관 해석 관련 분쟁은 'All or Nothing'의 문제가 아닌, '조금 더, 조금 덜'의 문제일 것이므로, 그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SI를 활용한 약관 내용 사전 점검, 행정지도, 과징금 부과, 자율규제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황현아 연구위원
hahwang@kiri.or.kr